#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

##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입니다.
- □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」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현행 조례에 따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은 3가지(규제표지판, 지시표지판, 보조표지판) 로 나뉘어 있어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장소를 인지하고 그 제한에 호응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.
- □ 또한 규제·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 설치로 규정되어 보조표지판 설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.

| □ 이런 근거로 본 개정안은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어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시성을 높인 새로운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  |
| 함으로써,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를 높이고 제힌   |
| 규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              |
| □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          |
| □ "별도"를 "별표"로 수정하고 자동차공회전 제한표지판을 하나로  |
| 통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또한 "별도"에 있는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을, 기후환경본부  |
| 대기정책과와 협의하여 "별표"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표지판으로    |
| 수정하였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 |
|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|
|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    |
| 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감사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